

#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9.

발의자 : 설훈 · 김민기 · 김한정

김병관 · 김태년 · 백혜련

안민석 · 조정식 · 권칠승

정재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 대한 통보, 기본계획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.

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임(안 제6조, 안 제7조의2 신설).

##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시행하여야”를 “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”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<p><u>제2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</u> <u>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</u> <u>로 정한다.</u></p>
--